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 선고 2022가단5049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이동규
변 론 종 결 2023. 3. 27.
판 결 선 고 2023. 5.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0. 1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0. 접수 제2558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6. 11. 2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C가 발행할 액면금 1,600,000,000원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D이 인수하기로 하는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금액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나. B, E은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계약 당시 C가 위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원리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고, 위 계약상 인수회사인 D의 권리를 유동화회사 등이 승계 및 인수하는 경우 B의 동의 또는 B에 대한 통지 없이 위와 같이 권리를 승계 및 인수한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유동화회사인 F 유한회사는 2016. 11. 24. D으로부터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하였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라. 이후 C는 위 사모사채의 만기일인 2018. 11. 24.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액 중 987,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B은 2020. 11. 9. 피고와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0. 접수 제255830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21. 6. 23. F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를 근거로 C, B, E을 상대로 위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2. 9. “C는 2,581,074,904원 및 그 중 1,288,316,835원에 대하여는 2021. 12. 29.부터, 1,273,926,486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B, E은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601,436,537원 및 그 중 953,411,803원에 대하여는 2021. 12. 29.부터, 636,963,243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러한 B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2. 2. 24. 피고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인데, 위 사건의 소장 부분이 이 사건 소장 부분보다 피고에게 먼저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22.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1068호로 원고와 C가 체결한 2011. 4. 8.자, 2012. 5. 17.자, 2019. 9. 19.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한 B의 연대보증에 근거하여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위 사건의 소장 부분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22. 3.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한 경우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학식

별지